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 實用新案登録無効

〈大法院 第2部判決 1978. 4. 25〉

裁判長：大法院判事 주재황

開與判事：“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이경호 이성규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한종기

訴訟代理人 辯護士·辨理士 조창희

3. 原審決 : 特許局 1977. 1. 19字 1975年 抗告審判 345號, 1975年 抗告審判 347號審決

4. 主文 :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5. 理由 : 被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본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그 說示와  
같이 本件登録考案의 構造가 同一  
또는 類似한 구조로 認定되고 다만  
그 실시와 같은 差異는 있으나 이는  
單純한 設計上의 微差에 不拘하고  
그 作用效果도 동일한 것으로  
본건 등록고안은 引用考案에 記載  
된 것에 의하여 登錄出願前에 그  
部分에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극히 容易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  
의 것이라는 要旨의 事實을 인정하고  
본건 등록고안은 舊實用新案法 第  
5條 2項에 該當되며 同法 第2條의  
規定등에 違背되어 등록된 것으로  
서 그 등록은 無効를 免할수 없다는  
趣旨의 判斷을 하였다.

이를 記錄에 對照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首肯  
되고 거기에 訴論과 같이 證據없는  
사실인정은 증거판단을 그릇하는 등  
遞增法則의 위배가 있다할 수 없고  
그 판단에 있어 소론과 같은 法理

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할 수 있으므로 이와 背馳되는 사실과 見解에  
立脚한 論旨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고 상고소송비용은 敗訴者인 피심  
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關與法  
官의一致된 意見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參考—

抗告審判 : 1975년 항고심판 제  
346호 1975년 항고심판 제347호.

심판청구인(피항고심청구인) 이  
경호,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  
인) 한종기, 심판청구인(피항고심  
판청구인) 이성규, 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위當事者間의 1974년 심판제402  
호 및 1974년 심판제14호(등록 제  
11015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의 審決  
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주

문과 같이 併合審決한다.

主文 :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成  
立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판비  
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審決 : 1974년 심판제402호의  
심판청구인 이경호, 피심판청구인  
한종기, 1975년 심판 제14호의 심판  
청구인 이성규, 피심판청구인 한종  
기.

위 당사자간의 등록 제11,015호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사건에 대하  
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主文 : 등록 제11015호 실용신  
안의 등록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심  
판비용은 심판청구인 및 피심판청  
구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X X X

用樣態가 자타상품을 식별한다는 기능면에서 사용된다고 認定되지 않을 때는 그 표시 사용은 상표사용이라고 할수 없다.

그리고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문자, 도형, 기호, 혹은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색채와의 결합으로된 표시가 상표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시가 그 사용되고 있는 位置, 樣態등에 비추어 포장등 상품 그 자체를 表彰하는 表記로서 쓰여짐으로써 他人의 상품과 구별하는作用을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妥當하다.

Y들이 제조 판매한 페난트는 清水地方을 根據로한 江戸末期의 賭博꾼인 山本長五郎의 史跡으로서의 小說, 演劇, 浪曲이란 民謡, 其他の 哉들이 이야기로 늘 流布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므로 이 사실을 전체로 한다면 Y들의 삽각기의 위 각표시는 바로 둘이야기를 想起시키며 그 裝飾의 効果와 더불어 需要者の 購買意慾을 蒙起하게끔 製作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Y들의 사용양태는 Y들의 상품인 삽각기를 표장하는 표장으로서 쓰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작용을 다했다고는到底히 인정할 수가 없다.

Y들의 위 각 표시는 옛이야기에서 活躍하는 次郎長以下人을 總稱하는 名稱으로서 일반에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이 文字部分이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며 쓰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X의 주장은 不當하다.

#### 6. 解說

상표법 2條 1項의 상표의 定義規定에 대해서 本條가 자타상품의 識別力を 本來의으로 전제로 한라고 표시한 最初의 判決이란 點에서 關心이 모여진다.

## — (國) (外) (事) (件) —

### 商標法의 定義와 特別顯著性

〈日本東京地法 1976年 2月20日判決 1970年  
[와]第6265號, 1971年(와)第8953號(併合)各  
商標權侵害停止등 請求事件〉

1. 原告:X

2. 被告:Y 등

3. 判決主文

原告의 請求는 모두 棄却한다.

訴訟費用은原告의 負擔으로 한다.

4. 事件概要

原告X는 指定商品, 屋內裝置品으로서 『清水一家二十八人衆』을 本件登録商標(一)로서 1963年 6月17日 登錄하고 같은 指定商品으로서 『次郎長』을 本件登録商標(二)로 하는 商標權者이다.

被告Y들은 清水次郎長의 文字를 또 清水의 二十八人衆의 문화를 表示한 長三角形의 페난트에 표시하여 이를 製作販賣하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爭點은 본건등록상표(一)(二)와 Y들의 標識, Y들의 페난트(三角旗)와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등의 關係로 侵害의 有無를 가리려는 것이다.

5. 判決要旨

X는 위 각표시 가운데 표지는 標章에 該當하며 本件登録商標(一)(二)에 類似하므로 위 각표시를 붙인 三角旗를 敗賣하는 Y들의 行爲는 X의 本件各商標權을 침해한 것이라고 主張함에 대하여 Y들은 위 각표시는 포장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 Y들의 商品三角旗에 표시함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商標權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抗議하고 있는데 대하여 檢討한다.

상표권침해의 要件인 登錄商標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라함은 商標法 第2條 第1項에 規定하는 『文字圖形, 記號 혹은 이들의 結合 또는 이들色彩와의 결합(以下「標章」이라함)한 것을 業으로 하여商品을 生產하고 加工하고證明 또는 讓渡하는者가 그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者』임을 必要로 함은 말할나위가 없으나 상표는 本來 自他商品識別의 機能을 目的으로하는 표지이며 日本의 商標制度도 상표가 갖는 이 자타상품식별의 機能維持保護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同法 第1條에 규정하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明白하므로 前記第2條 第1項은 形式的으로는 상표의 自他商品識別機能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條項中에는 당연히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의 상표의 概念이前提되어 또한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商標權者는 第3者에 의한 등록상표의 無斷使用 또는 類似商標의 사용을 禁止할 權利가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등록상표와同一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使